#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22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이훈기·손명수·김정호

김태선 · 허종식 · 허 영

김우영 · 김교흥 · 황정아

이광희 • 이기헌 • 조인철

박홍배 • 민병덕 • 김 현

채현일 · 강유정 · 강훈식

백승아 · 조계원 · 박선원

이병진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. 동법 시행령은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'를 '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'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 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	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
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	4
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	
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	
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	
의 및 시정요구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다만, 「신
	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
	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
	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
	정보는 제외한다.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